

대구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2 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3. 8. 7. 11:00
2. 장 소 : 정보통신원 2층 노동조합회의실
3. 출결사항

구분	인원	성명
참석	8명	최계호위원장, 박경순위원, 우정한위원, 박상룡위원, 황금천위원, 임정규위원, 정환선위원, 김혜옥위원
불참	1명	조정연위원

4. 안 건
 - 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의 건

5. 회의내용

가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
간사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한 후, 위원장에게 개회선언을 확인하다.

나. 안건 : < '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의 건' >

- 위 원 장 : 위 의안을 상정한 후,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간 사 :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「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」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설명을 하다.

1.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

1) 관련 법조항 :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 47조 제1항 및 제2항

간서명	부위원장	<i>3 리태</i>	위원	<i>박경순</i>	위원	<i>임정규</i>
-----	------	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

-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[개정 2012.1.26]
- ② 「사립학교법」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. [신설 2012.1.26, 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2) 2013학년도 학교비회계 사학연금 학교부담 예산현황

(단위 :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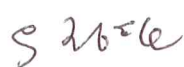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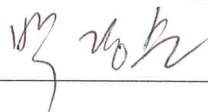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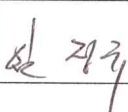
구분	예산항목	예산	예산총액
교원	사학연금	92,723,000	188,253,000
	사학연금재해보상	6,771,000	
직원	사학연금	84,900,000	
	사학연금재해보상	3,859,000	

- 박상룡 위원 : 사립대학의 법인현황과 사회적 배경, 우리대학 법인의 입장등을 설명하다.
- 정환선 위원 : 관련 범조항을 통한 안건과 관련된 기본사항은 동의하고 사학연금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별도로 상담을 요청하다.
- 간 사 : 위원회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문사항 발생시에는 관련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다.
- 참석위원 전원 : 각 위원이 관련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「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」의 내용을 검토한 후, 상정 안건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, 「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」에 대해 찬성 의결하다
- 위 원 장 : 참석위원 전원의 「201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」의 찬성 의결을 확인하고 심의를 종결하다.

< 폐회 선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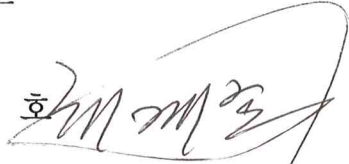
이상과 같이 회의를 마치고 최계호위원장이 11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을 확인 함.

간서명	부위원장		위원		위원	
-----	------	---	----	--	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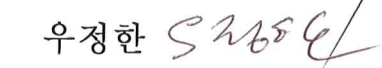
2013년 8월 7일

위원장 최계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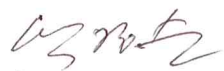


부위원장

우정한



위원 박경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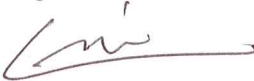
위원 박상룡



위원 황금천



위원 임정규



위원 정환선



위원 김혜옥

